
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 기능을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 중심으로 기능을 신설하여,
- 효율적 조직구조 개선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부응하는 발전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분장사무 신설

가. 건설도시국 분장사무 신설 :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

- 도시재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 신설

나.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분장사무 신설 :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

- 강동문화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

○ 별표 개정

가. 별표1 : 선산보건소 관할 일부 보건진료소 위치변경에 따른 내용수정

나. 별표2 :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도로명주소 수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도시재생업무와 강동문화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업무를 신설하여 신규 행정수요 중심으로 시정의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며,
- 보건진료소 및 노인종합복지관 주소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